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1]중 괴산학생야영장란 및 음성학생야영장란을 삭제하고 명칭란중 "음성학생야영장조촌분원"을 "음성학생야영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